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38

제출년월일 : 2007. 11.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세 감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2007.7.1부터 금융상품이 출시되어 '08년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제도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나. 「도서관 및 도서관진흥법」에서 「도서관법」으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규정함(안 제8조).

다. 「문화재보호법」이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정비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라. 안산시 시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에 대한 경감조항을 시세 감면 조례에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10조의2).

마.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취지와는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부동산으로 제한하여 규정함(안 제19조).

바.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규정의 「공단」을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지방공단」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0조).

사.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 만료(2007.12.31)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하므로 2009년12월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함(안 제25조).

□ 개정 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 「도서관법」 제31조 및 제40조

○ 「과학관육성법」 제6조

○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47조

○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7. 11. 02. ~ 2007. 11. 14.(12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2007.10.10)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8조 본문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제9조 중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2조"를 "제47조 제1항"으로 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부동산"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다음 각호"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실·과		세 정 과
입	실·과장 직위·성명	세정과장 권 혁 수
안	담당·팀장 직위·성명	세정담당 서 근 식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손 석 주 (행정 219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생략)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감면신청하여 등록한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 4. (생략) ③(생략)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②----------「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부상자---------- 1. ~ 4.(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이고, 주택가격이 3억원이하인 주택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7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6. 도서관및도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7.「과학관육성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 3. (생 략)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1. 「문화재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 3. (현행과 같음) ②----------제47조제1항----------.
<신 설>	제10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 2. (생 략)	제1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 --- --- --- --- --- --- --- --- --- --- ----------.
제25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제25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 ----------.

현 행	개 정 안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안산시 시세 조례 제28조의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